

의안번호	2208657
의 퇴 인	서삼석 의원
회 답 일	2025. 4. 21.
추계번호	25B1284

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8조(벌칙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. 제18조제4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<삭제> 3.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·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. 다만,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「선박안전법」 제20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, 「어선법」 제25조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또는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3에 따라 선박수리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함(단서 신설)	의무규정
	안 제41조(과태료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1항) 2.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(신설) ※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고, 시·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중 「선박안전법」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지정을 받은 자 등을 벌칙 대상에서 제외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8조(벌칙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	안 제41조(과태료)	

2. 상세 사유

□ 벌칙 및 과태료 조정(안 제38조 및 안 제41조)

- 개정안은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고, 시·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중 「선박안전법」에 따른 지정 정비사업장 지정을 받은 자 등을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
- 현행 형벌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의 수입이 되나, 법무부에 따르면 형벌 규정에 따른 벌금 수입을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 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고, 향후 개정안에 따라 제재 조치를 과태료로 변경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벌칙 규정 완화에 따른 위반행위의 증감 등을 예측할 수 없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감소 및 과태료 수입의 증가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